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사용 제재조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01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안) (직접비)

As Is

To Be

관리 편의주의 연구비 규정으로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연구비 자율성 제고(네거티브 규제 전환)

01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하여 연구에만 몰입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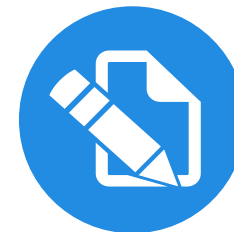
- ☑ 용도에 따른 비목 구분, 증빙자료 구비 등 행정부담 없이 자율사용
- ☑ 직접비(경직성비용 제외) 10%이내에서 재료비, 장비비, 활동비 성격비용 자율사용
- ☑ 연구비 사용에 대해 연구자가 별도로 증빙자료 구비할 필요 無
※ 연구비시스템에서 연계전송 시 카드매출전표(자동연계), 사용목적만 기재
- ☑ 본격적 시행('27년 예정)에 앞서 비영리기관(대학)에 시범적용('26.下예정)

02

단순 연구비 사용에도 과도한 증빙 요구

증빙자료 최소화

- ☑ 단순비용(회의비등) 사용에도 사전결재문서 등 과도한 증빙 요구
- ☑ 경직된 회의비(식비)사용요건(외부인원 필수참석)
→ (개선) 회의비(식비)사전결재문서 및 외부인원 필수참석요건
개정하여 연구자간 의견교류 활성화 및 행정부담 완화



01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안) (간접비)

As Is

To Be

관리 편의주의 연구비 규정으로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연구비 자율성 제고(네거티브 규제 전환)

불가항목 이외 연구 관련 항목 사용 가능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

- ☑ 기존비목(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별 사용불가항목 명시
 - ☑ 주류비용, 연구와 관련없는 단순홍보·사교성 비용 등 공통불가항목 명시
- 연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별도 규정 개정없이 유연한 연구비 집행 가능

구분	간접비 사용용도 사용불가항목(세부)
공통 불가항목	주류 비용, 단순 홍보 비용, 사교 모임, 배상금·위약금 등,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일반적 비용, 직접비 성격의 비용 등
인력지원비	1) 전임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 지급받는 연구자의 인건비 2) 대학원생 성적 우수, 조교 장학금 등
연구지원비	1) 대학의 운영비용 및 교육 관련 비용 2) 성과급, 장려금 등 인센티브성 경비 3) 연구공간 임차료 4) 경조사비 5) 건축비 및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단순 홍보 물품 집행액 등

02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방안

1. 제재부가금

As Is

위반금액 대비 낮은 제재부가금 수위로 인해
연구비 부정사용 억제 효과 미약

To Be

연구자율성을 악용하는 부정사용에 대해
위반금액의 20~30배의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여 연구책임성 확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한도 상향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2배 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7])

제재부가금 부과 개별기준 상향

100분의 50범위에서 가중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별표7])

가중처분 범위 확대 등 가중처분 강화

※ 특히 고의적·악의적 또는 다수의 부정사용에
대해 가중처분 강화

02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방안

2. 참여제한·형사처벌 연계

As Is

참여제한 기간 종료 후 연구에 복귀할 수 있어
중대 부정행위 방지의 한계
→ 국가R&D에 대한 국민 신뢰 악화

To Be

중대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의 실질적 퇴출을 추진하여 연구윤리 확립

10년의 범위에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참여제한 최대한도 상향

참여제한 부과 개별기준
최소 6개월 ~ 10년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6])

참여제한 부과 개별기준 상향

100분의 50범위에서 가중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별표6])

가중처분 범위 확대 등 가중처분 강화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조치 근거 부재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조치 근거를 명시하여, 형사처벌과 연계 강화